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94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을 위원회 간사자격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공무원) 위원을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에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2명’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나.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실시 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자격을 ‘감사위원장’에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에 민간인국외여비 반영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대상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평가제외 대상)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의견 반영)
 - 개선의견 : 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변경)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6. 1. 5.~ 2016 .2. 4.) : 완료(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포함하
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
다)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
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
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의회의장”을 “시의회”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감사위원장”을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u>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위촉한다.</u> 2. 4명의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 2명과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u>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시의회의장의</u>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구성) ① ----- ----- -----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 ----- -----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 -----.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 ----- ----- 시의회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감사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감사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 -----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 따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교육, 연수 등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6조의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①항 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개정안의 시행으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교육, 연수 등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매년 예산 편성액이 15,000천원이고 평균 예산 집행액이 13,192천원(연수 미실시한 '15년도 제외)임을 감안할 때, 소요비용은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별도 비용추계서 작성하지 않음

-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편 성 액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집 행 액	-	15,000	11,963	11,341	14,464
집 행 률	-	100%	80%	75.6%	96.4%

※ '16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 15,000천원

4. 작성자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구혜선 조사관 (2133-3161)